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30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5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누431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군수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6. 4. 19. 선고 2015구합1439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10. 26.
판 결 선 고	2016. 11. 1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5. 7. 10. 원고에게 한 [redacted] [redacted]군 B 외 3필지 22,774㎡에 관한 취득세 12,182,400원, 농어촌특별세 2,436,480원, 등록세 6,091,200원, 지방교육세 1,138,240원 및 [redacted] [redacted]군 C 외 1필지 3,415㎡에 관한 취득세 3,227,850원, 농어촌특별세 430,380원, 지방교육세 185,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30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'3322㎡' 뒤에 'I 전 450㎡'를, 제4쪽 제16행의 '못한 점' 뒤에 '⑤ [redacted]군 J면장 작성의 2010. 5. 19.자 농지 경작사실 회신(갑 제8호증의 1)에는 원고가 이 사건 F리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그 작성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F리 토지를 매수한 2010. 4. 28.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데다가 총 경작면적 22,774㎡(=7,432㎡+11,570㎡+3,322㎡+450㎡)에 이르는 농지의 경작상황에 대한 확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, 원고 또한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, 위 회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, ⑥ [redacted]군 J면장 작성의 2013. 3. 14.자 농지 경작사실 회신(갑 제8호증의 2)에는 2013. 3. 12. 당시 원고가 이 사건 F리 토지와 이 사건 H리 토지 중 C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첨부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들 일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을 뿐 위 토지들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, 원고가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회신내용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'을 각 추가하고,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2 내지 15호증(가지번호 각 포함)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,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30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조해현

판사 왕정옥

판사 송혜정